

●국토교통부공고제2019-341호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,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3월 22일

국토교통부장관

신기술 지정 신청

1. 기술개발자

가. 성명 또는 법인명(대표자 성명) : ① ㈜다음기술단(박철) ② 우리기술(주)(박나영)

나. 전화번호 : ① 031-698-2288 ② 044-855-1358

2. 명칭 : 1MHz급과 2MHz급 통합운용이 가능한 전동지그 일체형 소나장비를 통해 구조물 및 하상면 고해상도 수중영상획득 기법

3. 내용요약

<분야>

토목 / 교량 / 교량 유지보수, 토목 / 항만 및 해안 / 항만 시설물 유지보수

<기술의 요지>

이 기술은 1MHz급 소나와 최대 분해능 8mm를 갖는 2MHz급 주파수 대역의 고해상도 소나가 일체화된 소나장비를 360° 촬영각도 조절이 가능한 일체형 전동지그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중부 유형에 따라 각도 조절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수중부 영상 확인 및 저장이 가능한 수중부 표면상태 및 하상 지형을 조사하는 안전점검 장치이다. 따라서 잠수사 투입없이 수중구조물의 결함과 표면상태 확인, 세굴과 하상지형 조사가 가능해 수중부 안전점검에서 정밀도, 편리성, 객관성, 안전성이 향상된다

<범위>

1MHz급 소나와 최대 분해능 8mm를 갖는 2MHz급 주파수 대역의 고해상도 소나가 일체화된 소나 장비, 360° 회전이 가능한 일체형 전동지그 및 1MHz급과 2MHz급 통합운용기술(고해상도 소나 운용 실시간 확인 기술, 전동지그 실시간 제어기술, 고해상도 소나 영상Data 후처리 및 확인 기술)로 구성된 수중부 표면상태 안전점검 장치

4.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(전화: 031-389-6350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

가.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

나.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

- 1)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·도용한 경우
- 2)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
- 3)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다. '나'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